

●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491호

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사업청을 대전 이전공공기관으로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.

2022년 08월 31일

국토교통부장관

**방위사업청 이전공공기관 지정**

1. 고시내용 : 방위사업청을 대전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
2. 결정취지 : 방위사업청 관련 기관이 집적화되어 있는 대전으로 이전함으로써 유기적 연계·협업 및 시너지 효과 창출 가능
3. 첨부물 :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·의결 결과
4. 기타문의
  -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[www.molit.go.kr](http://www.molit.go.kr))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(혁신도시발전추진단 혁신도시정책총괄과, ☎ 044-201-4458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